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7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종별	지정 번호 및 명칭	보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제1호 칠(옷칠)	손문규	남	1981. 11.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1동(이하 생략)

2. 인정일 : 2018. 11. 8

3. 인정사유

- 손문규는 토회만들기, 옷칠 정제, 도장, 주걱칠, 귀얄 제작, 광내기, 자개찾기 등의 전수교육조교 기능 평가를 위한 평가 과제를 수준 높게 완성하였으며, 작업의 원리에서부터 도구의 제작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옷칠 제작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교육·전시 등 전승 활동 실적 등도 탁월하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호 칠(옷칠) 전승과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호 칠(옷칠)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8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종로구 숭인동 10번지일대 숭인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 구역

1) 종로구 송인동 1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B	12	송인동	10	1.7	190%	12층 이하	60%	1	주택재개 발사업	전면 개발	2004. 6. 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2. 해제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1항 1호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위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2.2.1.)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관할 구청장이 주민공람 등 해제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해제 함.

3. 해제도면 : 붙임 참조과 같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02-2133-7187) 및 종로구 주택과(☎02-2148-2623)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송인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송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도면]

